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28일, 윤건영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8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건영 의원)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
관 등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함. 또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음.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등

개정안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목적에 “기록물의 전시·연구·교육 등”을 추가하고, 건립 주체를 기존 “개인·단체”에서 “개인·민간단체·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한편, 개인·민간단체·지방자치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기부채납을 희망하는 경우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1항~제3항).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 제도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자문기관 및 경호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

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대통령기록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구분하여 별도의 보존·관리 체계를 두고 있음.

이는 대통령기록물의 독립적·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대통령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통합형과 개별형 기록관이 병존하는 관리체계를 두고 있음.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 주체는 국가, 개인, 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민간(개인·단체)이 개별 기록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 국가에 기부채납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건립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개별대통령기록관 제도는 미국의 대통령기록관(Presidential Library) 시스템을 참고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민간재단 등이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고, 이를 연방정부(국립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에 기부채납하면, NARA가 해당 기록관을 운영·관리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된 사례가 없는바, 특히 민간 차원의 참여가 부진한 주요 원인은 막대한 건립비 부담, 기록관 건립에 대한 정치적 논란 및 사회적 인식 부족, 복잡한 법적·행정적 절차 등 사회적·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 결과, 모든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이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 관리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공개 및 활용의 활성화, 지역 주민의 기록 접근성 확대 등 개별대통령기록관 제도의 입법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기록관의 설치 목적에 “기록물의 전시·연구·교육”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건립을 희망하는 주체에게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의 활성화는 통합형 기록관과 개별형 기록관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된 현행법 제25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특히 기존 통합형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집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대통령 개인기록물 등 다양한 출처의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고, 기록물의 맞춤형 보존과 국민의 알권리 증진 등 공공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

다고 보임.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기록관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에 대한 양여 등 처분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제1호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가와 구별되는 독립된 법인격과 일정 범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고 직접 관리·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검토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주체 및 지원 범위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간의 기여를 통해 국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현행법 제25조의 취지와, 국가사무의 비용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개별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추천권 확대 및 운영규정 신설

개정안은 기존에 “해당 전직 대통령”에게만 부여되던 개별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추천권을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한 자”에게도 확대 부여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5항~제7항).

현행법이 개별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추천권을 해당 전직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은, 기록물의 공개·보존·활용 과정에서 당사자인 대통령이나 유족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기록관 운영의 신뢰성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기록관 건립에 재정적으로 기여한 개인·민간단체·지방자치단체에게도 기록관장 임명 추천권을 부여하는 경우, 기부자가 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부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 제6항의 전시관·도서관·연구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설치 규정과, 제7항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은 기록관의 교육·연구·홍보기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현행법상 미비했던 세부 운영지침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전직 대통령 또는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기부채납하는 자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전직 대통령 또는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기부채납하는 자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5조제1항 중 “대통령의 기록물의 관리·전시·연구·교육 등”을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전시·연구·교육 등(이하 “관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 제25조제2항 중 “개인,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를 “개인 또는 단체”로 하고,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를 “대통령기록물의 관리등을”로 한다.

안 제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안 제25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개인,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를 “개인 또는 단체”로 하고,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를 “대통령기록물의 관리등을”로 한다.

안 제25조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임명을”을 “후보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특정 <u>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u>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 ① ----- <u>대통령의 기록물의 관리·전시·연구·교육 등을</u> ----- ----- ----- ----- ----- -.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 ① ----- <u>대통령기록물의 관리·전시·연구·교육 등(이하 “관리등”이라 한다)을</u> ----- ----- ----- ----- ----- -.
② <u>개인 또는 단체</u>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u>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u>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② <u>개인,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u> ----- ----- ----- <u>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u> ----- ----- ----- ----- ----- ----- ----- ----- -----	② <u>개인 또는 단체</u> ----- ----- ----- ----- <u>대통령 기록물의 관리등을</u> ----- ----- ----- ----- ----- ----- ----- ----- -----

개별대통령기록관
으로 본다.

<신 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
체가 국가에 기부
채납 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
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
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③ -----
-----개인, 민간단
체, 지방자치단체-----

-----대통
령의 기록물을 관
리하기-----

-----있고 기술
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
의 업무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을 무상으로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④ -----
-----개인 또는 단
체-----

-----대통령기록물의
관리등을-----

-----있고 기
술적·행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 을 설치하는 경우 에 해당 전직 <u>대통 령은</u> 그 개별대통 령기록관의 <u>장의</u> <u>임명을</u> 추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대통</u> <u>령 또는 해당 개별</u> <u>대통령기록관을 건</u> <u>립하여 기부채납하</u> <u>는 자는</u>----- -----<u>임명을</u> -----. ⑥ <u>개별대통령기록</u> <u>관의 장은 대통령</u> <u>기록물에 대한 효</u> <u>율적 활용 및 홍보</u> <u>를 위하여 해당 개</u> <u>별대통령기록관에</u> <u>전시관·도서관 및</u> <u>연구지원센터 등과</u> <u>전문인력을 둘 수</u> <u>있다.</u> ⑦ <u>그 밖에 개별대</u> <u>통령기록관의 운영</u> <u>에 관한 사항은 대</u> <u>통령령으로 정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 ----- -----<u>대통</u> <u>령 또는 해당 개별</u> <u>대통령기록관을 건</u> <u>립하여 기부채납하</u> <u>는 자는</u>----- -----<u>후보를</u> -----. ⑦ (개정안 제6항과 같음) ⑧ (개정안 제7항과 같음)
---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설치 등”을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를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전시·연구·교육 등(이하 “관리등”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를 “대통령기록물의 관리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를 “대통령기록물의 관리등을”로, “있다”를 “있고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대통령은”을 “대통령 또는 해당 개별대통령 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자는”으로, “임명을”을 “후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⑦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도서관 및 연구지

원센터 등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u>설치</u> 등)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특정 <u>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u> <u>하기</u>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u>설치</u> · <u>운영</u>) ① ----- ----- <u>대통령기록물의 관리 ·</u> <u>전시 · 연구 · 교육</u> 등(이하 “ <u>관리등</u> ”이라 한다)을----- ----- -----.
② 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u>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u>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 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 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 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 령기록관으로 본다.	② ----- ----- ----- <u>대통령기록물의 관리등을</u> ----- ----- ----- ----- ----- -----.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 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u>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u> <u>및 물품 관리법」</u> 에도 불구하 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인	④ -----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

<신설>

<신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등을-----

-----있고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대통령 또는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자는-----후보를-----.

⑦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